특수 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 성 규 | 공주대 사회정책학 교수

Ⅰ. 제도는 정착되고 있는가?

5년 전 장애인들이 대학에 특례 입학될 것이라는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장애인계에서는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면서도 대학 교육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하며 정부의 방침을 대체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각 대학들은 편의 시설이라는 기본적인 장벽을 넘지 못하여 이 제도에 대한 실시를 유보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점차 변하고 있는 추세도 감지되고 있다. 제도가 그 공고화의 과정을 밟아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유동성을 지닌 채 표류하는 듯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부 시행 계획에 '특수 교육 대상자로서 신체 장애 유형 및 정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 입학 전형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생산적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 대학 입학에 있어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입학 기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 제도가 대학의 자율 속에서 매우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우리의 제도는 늘 그러하였다. 법적으로는 4대 보험이 마련되어 있고, 전체 국민의 교육 평등권도 규정되어 있으며, 선진국들이 보여 주고 있는 복지법의 외형은 잘 빌려 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루는 기반 조성과 사전 준비의 부족은 의약 분업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와 국민을 허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학에 대한 지원 및 제제 조항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청주대 황선경 씨와 서울교대 김훈태 씨 등의 사건이 보여 준 것은 다름 아닌 '미흡한 제도에 의한 좌절' 이었다.

Ⅱ. 교육 평등권의 확보가 아니라 고산 지대에 덤핑한 것과 같다

원래 장애인들의 대학 특례 입학은 장애로 인한 교육 현장에의 차별적인 진입을 바로잡고 기회의 평등을 이루려 하였던 것이 정책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사회 통합이라는 우산 같은 개념과 노말라이제이션이라는 단위 개념에 힘입은 통합 교육의 한 양태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노말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인식 없이 북아메리카의 지역적 여건에 맞는 이론이 편향적으로 들어왔다.

역사적인 사실을 잠깐 훑어보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평등권에 입각한 정상적인 생활 조건(normal living condition) 개념이 윌펜스버거

(Wolfensberger) 등 북미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북미식의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미 학자들은 미국의 자존심을 등에 업고 30여 년에 걸쳐 미국의 열악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하여 반성하고 개선책을 연구하게 된다. 이들은 틈만 나면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하여 시설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스칸디나비아 학자들을 초청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열심히 배웠다. 국가 복지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스칸디나비아의 정책 환경은 북미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북미 학자들은 중앙 정부의 손길이 북구보다는 멀게 미치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사회에 좀더 밀착도가 높은 개념을 개발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노리는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타난 개념이 바로 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화 개념이며, 이를 지지하기 위한 중간 매개 개념이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인 것이다.

정리하여 보면 권리의 개념에서 볼 때 평등하기만 하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통합 아닌 분리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equal but separate)는 스칸디나비아식 개념이 지역과 가족으로 복귀되기 위하여 시설(분리)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북미식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 바로 노말라이제이션 개념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에는 북미식의 개념만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이것이 무슨 새로운 복지 사회를 주도하는 반도체 칩인 양 인용되어 오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터부시하는 경향은 바로 이러한 관성의 소산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 즉, 충분한 복지 관련 인적 자원, 활용 가능한 자원 봉사 조직, 다양한 사적 복지 펀드, 각종 장애인 관련 수당 등 시설을 벗어나 지역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경우 총 장애 인구의 6% 정도가 아직도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역 사회에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 · 사적인 지원 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시설에 있던 장애인이 집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가족의 희생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 아동 부양 수당도 없고, 장애인 간병 수당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시설에서 돌아온 장애인들은 필경 또다시 '애물 단지'의 신세로 전락되고 만다.

장애 영역 확대로 인하여 장애인 범주에 포함된 정신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가정으로 돌아올 경우에도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 범위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도 그 부모들은 현재의 열악한 시설 수와 질적인 수준에 지쳐 있는 상황이며,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장애 인구의 1%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무슨 탈시설화인가?

대학의 장애인 교육에 앞서서 노말라이제이션과 그 궤를 같이하는 통합 교육의 현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의 경우 특수 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옮겨간 학생들보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 학교 또는 특수 학급으로 전이한 학생의 수가 다섯 배가 넘는 것은 우리의 학교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학급 규모와 개별화 교육의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조건 한 교실에 섞어 놓은 것을 통합 교육이라고 하는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어느 논자는 한국에서 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각종 프로그램들은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등산로도 없는 고산 지대에 덤핑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를 사회적 방기(social dumping)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 역시 장애인들을 삭막한 제도적, 물리적 장벽 속에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해 보고 싶다.

Ⅲ. 대학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여기서 언급한 환경은 편의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과 장애인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총칭한 말이다.

1. 서비스 창구 개설

장애인 학생이 입학한 이후에 당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본인들의 욕구에 대하여 개진하고 상담하며 항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건건이 부탁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필자의 강의실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하루는 필자에게 찾아와 교과서로 활용하는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 책 원고 디스켓을 부탁하여 입수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디스켓이 있어야 점자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부랴부랴 잘 알지도 못하는 출판사에 연락을 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봤지만 출판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 아직도 디스켓을 구하지 못한 필자와 그 학생들은 서로가 안타까워하면서 수업 시간에 어색한 정서를 마주하고 있다.

언뜻 생각나는 것이 필자가 공부한 영국의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장애 학생 상담실이었다. 그 곳에서는 장애인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사회 사업가 몇 명이 상주하면서 강의실 배치, 필요한 보조 도구, 기숙사 배정, 교통 안내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학교 당국은 물론이고 외부 기관에까지 연락하여 문제를 풀어 주었다. 심지어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교통비에 대한 보조도 학기 단위로 지급하여 주었다. 기숙사를 배정할 때도 신청순인 원칙을 뛰어넘어 우선 입주권을 줌과 동시에 기숙사 내의 동선을 고려하여 가장 편안한 방을 배정하여 주곤 하였다. 지도 교수는 자기가 담당한 학생이 장애인일 경우에 그 상담실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할 일의 전부였으며, 여타의 서비스를 직접 구해 주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정서적 시간적인 분산을 겪지 않고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도 모든 대학에 이 같은 최소한의 기능성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2. 구체적인 메뉴얼 마련

장애 학생 전담 창구 개설과 더불어 학사 운영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지도안 등이 나와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 학생들은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강의 청취 방법과 시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시험 시간을 대폭 늘려 주든지 아니면 대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지필 방법 대신 녹음 테이프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비교적 소상하게 체계적으로 기술한 지도안 등을 마련하여 전국의 교수들에게 배포하여 주어야 한다. 바쁜 일정에 쫓기는 교수들에게 사안마다 별도의 대응을 하도록 하는 번거롭고 불규칙적인 위임(?)을 하는 것은 장애 학생과 교수 쌍방이 당황하게 하는 계기를 자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3. 제도의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각 대학이

내보내고 있는 모집 요강만 분석해 보아도 특수교육 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제 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로 신입생 자격을 한정하거나 신체 장애인은 원서 제출 전에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장애인 심의 기구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조항들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집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론하기는 불가능하다.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와 법 집행을 어기고 빠져나가라는 얘기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최근 들어 규제 완화라는 말이 매우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규제 완화는 완화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별력 있게 풀 것은 대폭 풀고 묶을 것은 강하게 묶는 것이다. 사실 식품 위생 검사 등 인간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 등은 아무리 강하게 규제하여도 부족하다. 그것은 이 부분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입학 역시 그 동안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들에게 생존에 대한 기회의 평등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본뜻을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각 대학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며 비인권적인 방향성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규정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 지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규제를 수반해야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영국 LSE(1997,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 대통령 비서실 노동 담당 행정관,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주대 인문사회대 교수, 복지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 장애인미래연대 회장 등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책」 외 다수가 있다.